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8. 29 선고 2024나912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8. 29 선고 2024나91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가합1109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윤희준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김민지

변론종결 2024. 7. 4.

판결선고 2024. 8. 29.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가합110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A은 원고에게 486,903,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3.부터 2023. 9.

13.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A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49,860,71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9,860,7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공동피고 A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2항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별지1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해당 부분 중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 B”을 “피고”로 일괄하여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8행 “약 8,000만 원”을 “80,139,281원”으로, 같은 면 20행 “2022. 2. 17.”을 “2022. 10. 17.”로, 7면 9행과 10면 10행의 각 “피고들”을 각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8면 15행 “없은”을 “없는”으로, 같은 면 20행 “매매계약을”을 “매매계약을”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원철, 판사 김경선, 판사 기희광